

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11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1. 4. 15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“안산시 취업정보센터”가 “안산시 일자리센터”로 명칭이 변경(2010. 2. 3.)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고,
- 일부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 중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개정함.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정비.

개정조례안 : 불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「직업안정법」 제4조의 2, 같은법 제4조의 4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2. 15. ~ 3. 7.(20일간)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방침결정문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 중 “취업정보센터” 를 “일자리 센터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에 따라” 로, “안산시 취업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” 를 “안산시 일자리센터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센터는 고용안정시책” 을 “안산시 일자리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는 일자리정책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, “등의 반대급부를” 를 “등을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“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등에 관하여” 를 “등에” 로 한다.

제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시행에” 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| | 일자리정책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| 실·과장 직위·성명 | 일자리정책과장 최 종 재 |
| |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| 일자리센터담당 이 태 성 |
| 자 | 담 당 자 성명·전화 | 주 정 귀 (행정 2859) |

[별 표]

상담원의 자격 (제6조제1항관련)

상담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·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· 직업지도 · 직업정보의 제공업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.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상담훈련 과정 수료증 소지자
3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
4. 초 ·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,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, 직업지도,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5. 그 밖에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 상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<u>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<u>안산시 취업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운영) 센터는 고용안정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.</p> <p>제3조(업무 등) ①(생략) 1.~3.(생략) 4. 기타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 ②센터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의 반대급부를 징수할 수 없다.</p> <p>제5조(상담원의 채용등)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1년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③시장은 상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</p> <p>제6조(상담원의 자격기준등) ①(생략) ②상담원의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직업상담원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<u>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에 따라<u>안산시 일자리센터</u>.....</p> <p>제2조(운영) <u>안산시 일자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는 일자리 정책</u>.....</p> <p>제3조(업무 등) ①(현행과 같음) 1.~3.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 ②.....에 따른등을.....</p> <p>제5조(상담원의 채용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에 따른 ③.....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상담원의 자격기준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등에.....</p> <p>제7조(시행규칙)<u>시행에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상담원의 자격(제6조제1항관련)</p> <p>상담원의 자격은 <u>고등교육법에 의한</u> 4년제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<u>직업안정법에 의한</u> 구인·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·직업지도·직업정보의 제공업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</u> 사회복지사</p> <p>4. <u>초·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</u> 학교, <u>청소년기본법에 의한</u>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, 직업지도,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</p> <p>5. 기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 상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</p> | <p>.....</p> <p>.....에 따른.....</p> <p>.....<u>각호의 어느하나에</u></p> <p>1.에 따른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에 따른</p> <p>4.에 따른에 따른.....그 밖에.....</p> <p>5. 그 밖에</p> |